

사업재산권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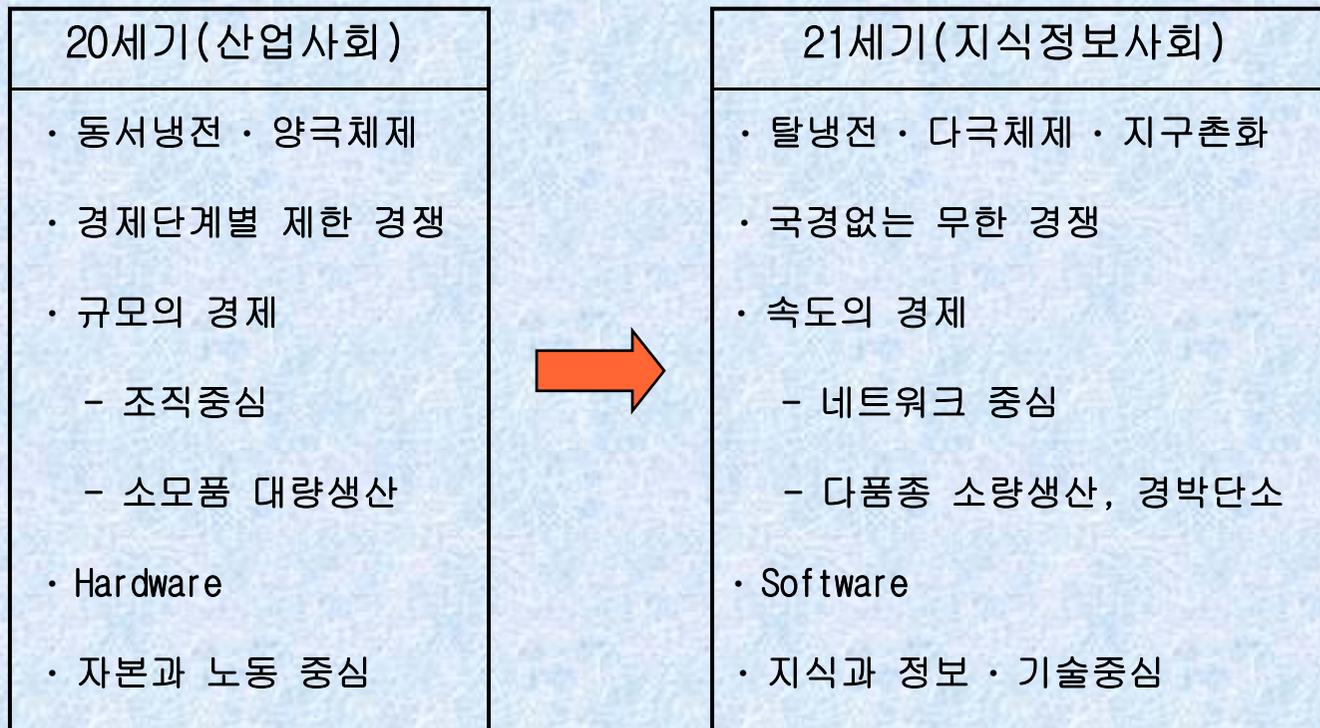
국제 통상론

제7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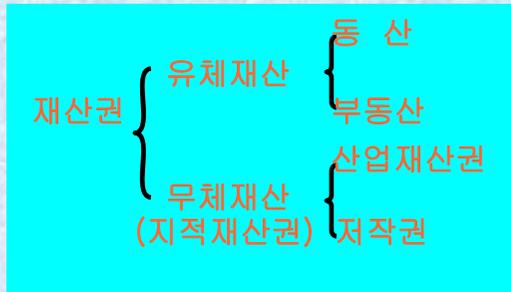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 21세기 세계 경제환경의 특징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함

산업재산권

- 특허 (Patent)
- 실용신안 (Utility Model)
- 의장 (Industrial Design)
- 상표 (Trade Mark)

저작권 : 인류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음악, 방송, 미술 등 분야)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DB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산업재산권의 의의

산업재산권이란?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임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산업재산권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정의	현존하지 않은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개량에 의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한 물품(소 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 → 미감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화	탁상 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등의 전화기	제조회사 등의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20년 (법 제88조)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10년 구법 15년)	설정등록일 기준 15년(법제40조)	설정등록일 기준 10년 (10년 마다 갱신 가능 →반 영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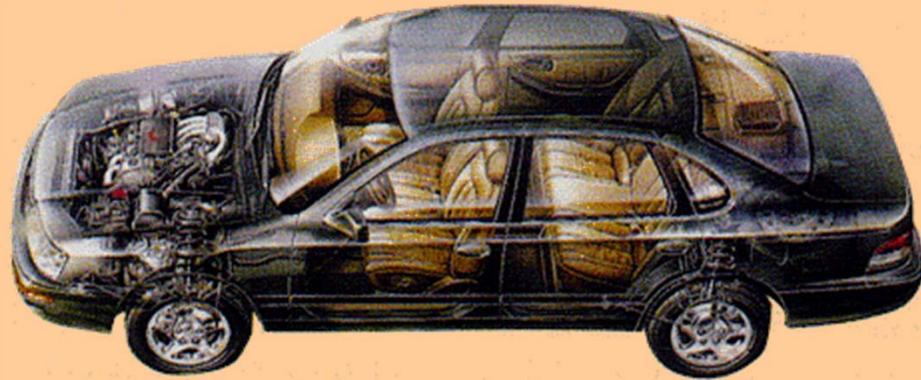
산업재산권 4권리 개념도 (예시)

특허 원천·핵심기술

- ABS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 저연비 엔진 기술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 백미러 관련 기술
- 컵홀더 관련 기술
- 자동차 문관련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의장 물품의 외관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램프 형상
- 리어스포일러 형상

상표 상품의 명칭

- 자동차 명칭
(무쏘, 그랜저, 레간자등)
- 제작사 명칭
(현대, 대우, 기아)

특허제도의 기본원리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私益)

이용(公益)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 특허권 부여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명세서, 도면 제출

특허 발명에 대하여 공보
발간(공개공보/등록공보)

공개된 특허정보를 이용한
신기술 개발 촉진

특허권(지식재산권) 보유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첫째,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가능

-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권 향유
(第94條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얄티 수입 가능

- ☞ 폴라로이드사와 코닥사간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 경영의 최고 목표를 특허권 획득에 두어 기술독점을 통한 세계시장 석권 추구

둘째, 타인의 모방·침해등에 따른 특허분쟁을 사전예방 하거나 관련 기술 특허권자와는 Cross-License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

- 아무리 훌륭한 발명·기술개발이라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무용하며, 먼저 발명했다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자신은 권리 확보 불가능

- 자신의 발명·기술개발을 적시에 출원, 권리화해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권리를 무단사용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보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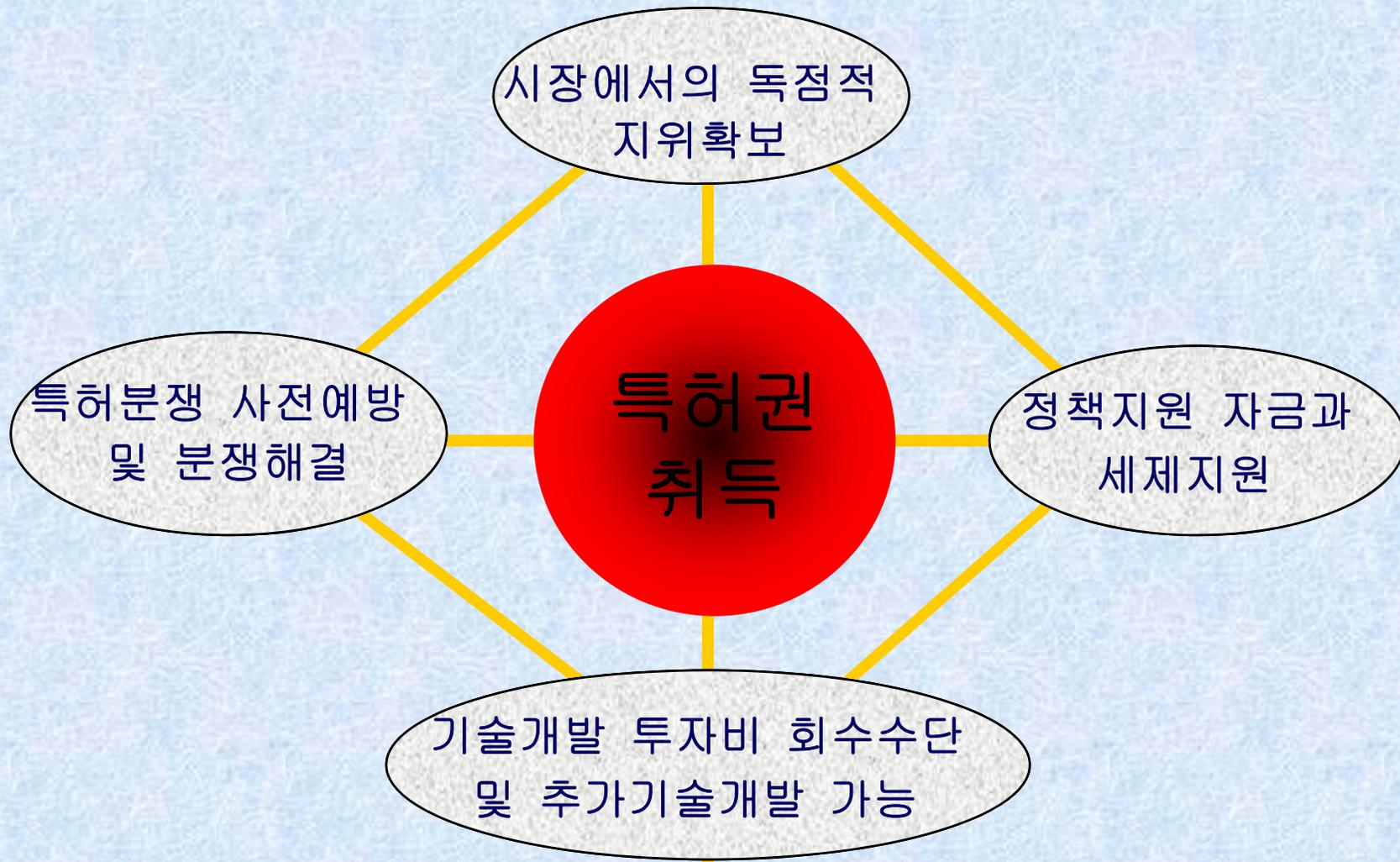
셋째, 기술개발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 가능

-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독점적 이윤 보장
- 먼저 개발된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기술 개발 가능

넷째, 벤처자금, 기술담보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활용 가능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 혜택 가능
- 특허권을 담보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기술담보 사업자금 활용가능
- 특허권등 지재권의 사업화 추진시 『특허기술사업화자금』 활용 가능
- 산자부, 중기청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특허권 보유 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실시중

특허권 취득



어떻게하면 권리를 빨리확보할 수 있는가

- 권리의 조기확보는 타인의 모방판매등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매우 중요

第94條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 첫째, 출원을 다른사람보다 먼저 할 것
- 둘째, 출원단계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이중출원
- 셋째, 출원이후에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우선심사신청 제도> 참조

산업재산권 제도 소개

특 허 (Patent)

■ 특허권

-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독창적 사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것

★ 특허될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등에 관한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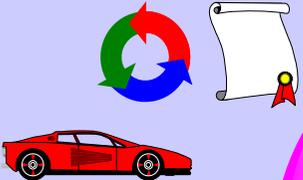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권리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 허 (Patent)

신규성이 있을 것

국내외에서 공지, 공용, 문헌
공지, Web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진보성이 있을 것

종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當業者가 용이하게 생각
할 수 없는 발명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선출원일 것

먼저 출원할 것



산업상 유용성이 있을 것

반복 생산이 가능, 경제성(X)



■ 특허의 요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이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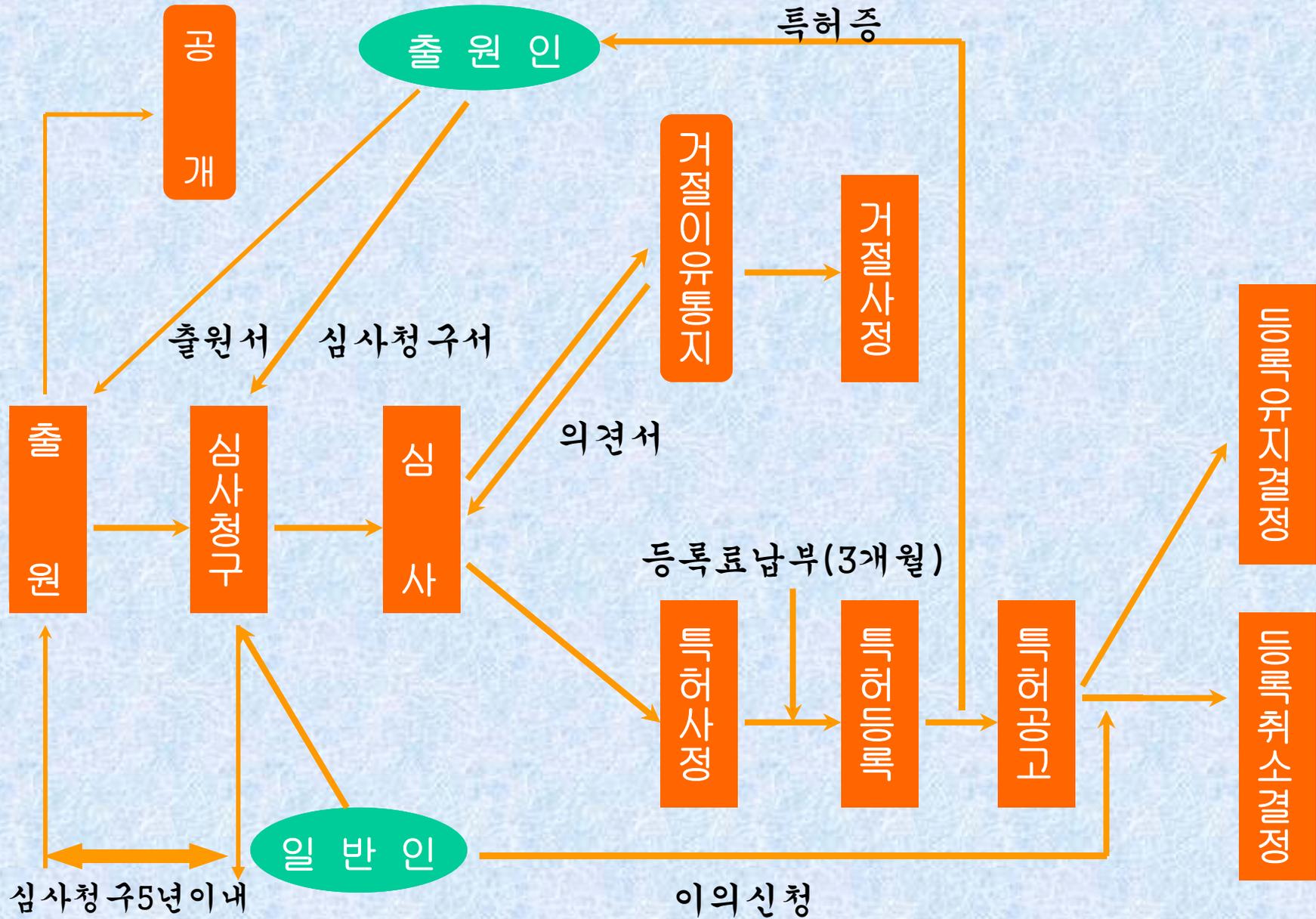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아
니
오

거
절
결
정

등
록
결
정

■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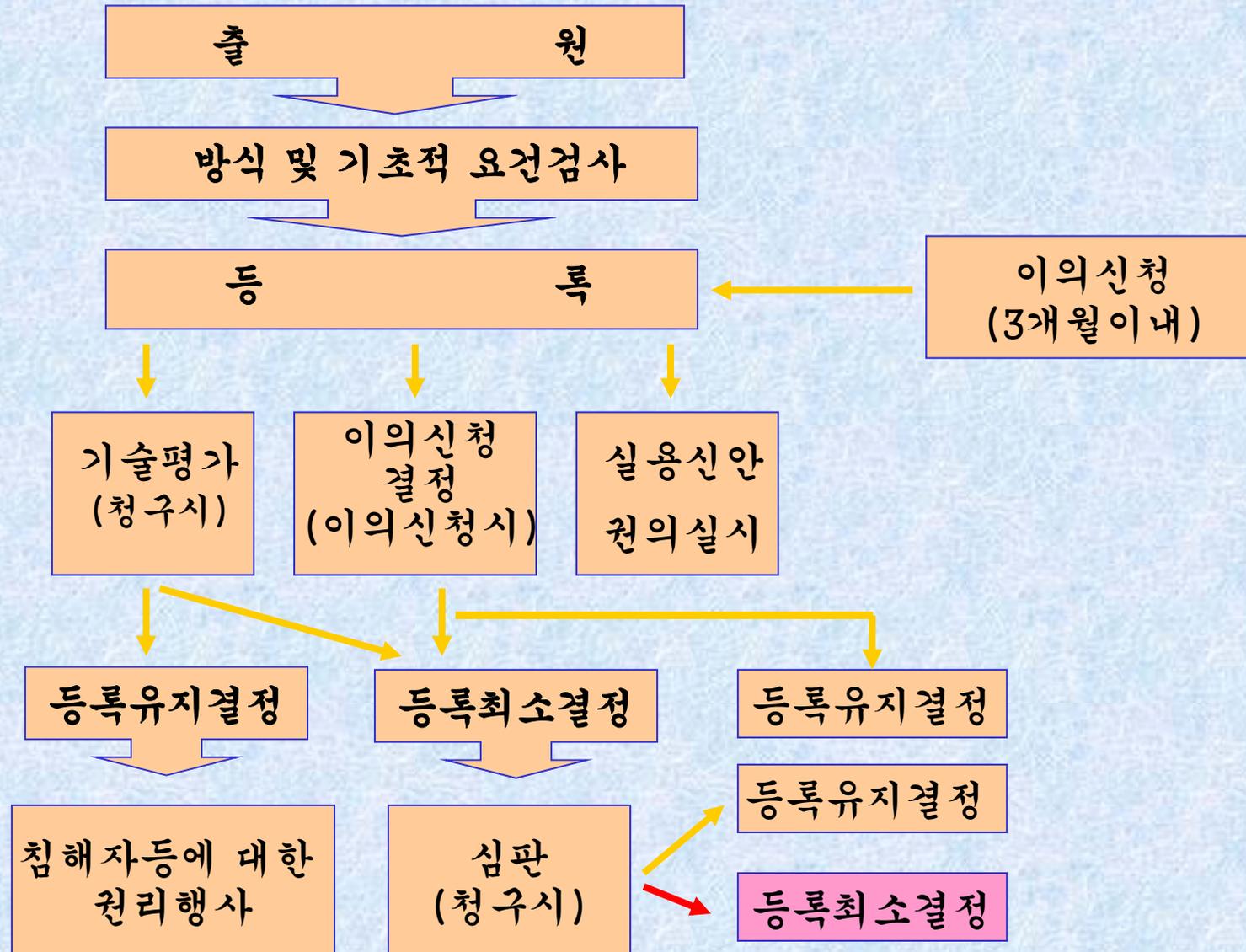
실용신안(Utility Model)

■ 실용신안

-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 ★ '99.7.1 부터 출원후 3~6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시행중

권리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 및 처리절차도



출원공개제도

◆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64조).

◆ 출원공개를 통하여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지는 모순을 방지하며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 서면으로 경고(법 제65조제1항)

◆ 보상금청구권 발생 (법 제65조제2항)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보상금을 청구.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이어야 가능.)

◆ 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

심사청구제도

- ◆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 ◆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하고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실용신안, 의장, 상표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 ◆ 누구나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사청구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취하 불가능.(법 제59조 제4항)
- ◆ 분할,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이중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법 제59조 제3항)

이중출원제도

■ 이중출원제도

- ★ 동일한 내용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 출원후 1~2년의 기간동안은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권리행사, 향후 특허가 등록된 후에 안정된 장기간 권리를 원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

■ 이중출원 가능시기

-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 특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기전까지
 - 특허출원이 거절사정된 경우 최초 거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실용신안권 설정등록후 1년내)

■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가능
-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포기)
- ★ 효과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기타 특허.실용신안 관련 주요제도

우 선 심 사 제 도

■ 우선심사제도

- ★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신청대상

-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 된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공개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업으로서 무단실시하는 경우
- ★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관련된 출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관련발명

■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

- ★ 매건당 167,000원에 우선심사 신청당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청구항 1항 초과시 마다 1항당 32,000원 가산
- ★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26,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 0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 0 벤처기업의 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 0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0 자기실시 출원 자기실시를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 0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0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기술 개발전문기업확인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

■ 기술평가제도

-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는 간단한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한 후 권리를 부여하므로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경고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 이를 제시하여야 가능함

■ 기술평가 청구 및 처리절차

- ★ 누구든지 설정등록후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하나 청구취하는 불가능
- ★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예고등록후 공보에 게재
- ★ 심사관은 기술평가후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
- ★ 취소결정전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 청구 가능
- ★ 유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 가능

특허이의신청제도

-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함
-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방지함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심사관합의체(3인)는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특허 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음

심사청구 및 심사처리

■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심사청구기간

특 허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단, 신법적용분은 심사청구제도 없음)
의장.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

특허 약 23개월	의장 약 8개월
실용신안 약 3개월	상표 약 12개월

등록신청 절차

■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최초 등록료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
- 추가 납부 기간
3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중에 납부 가능(등록료 2배 납부)
추가 납부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영구히 소멸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
- 추가 납부 기간
 - * 새로운 연차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
 -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납부 기간중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 예고 안내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등록되며 일단 소멸된 후에는 회복 불가능

특허관리 성공사례

사례1.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특허기술 및 분쟁 내용

- (주)상아프론테크(종업원 198명)는 중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전자 레인지의 과열 방지 장치를 제작 S전자에 납품하여 오던중
- 동일품목을 일본 개인발명가(나시또 요시유키)로부터 기술도입하여 생산하는 국내 「코니사」로부터 특허침해를 했다는 경고장을 받음

특허관리 노력 및 결과

- 동사는 이런 상황이 제기될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초빙, 철저한 특허관리(동제품 개발전에 이미 먼저 전세계에서 특허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그들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피 설계) 실시
 - 동 경고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기술내용이 상이하다는 입증을 통해 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
- 또한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도 외국 특허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제품을 개발(특허분쟁없이)하여 연간 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달성

퇴임교수의 보수(3천/년)와 코니사의 과열방지장치의 특허침해로 지불해야 할 예상특허료(9백/년) 및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 제조기술 예상 특허료(3천/년)를 대비하여도 특허관리 결과가 이익이었으며 매출신장, 고용증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컸다는 평가

사례2.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 하이게인 안테나

- 경기도 반원공단 소재, 안테나.계기분야 중소.벤처기업
- 1970년대이후 정보통신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개발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조기 확보하는 전략으로 연 매출액 680억, 수출 17만불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

■ 텔슨 전자

- 특허왕국이라 불리는 텔슨전자는 특허 20건을 포함 총 6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면서 창업7년만에 연 매출액 700억대의 기업으로 성장
- 또한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상자도 외국 특허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제품을 개발(특허분쟁없이)하여 연간 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달성

- 서부산업 - 어학학습기 닥터위콤으로 유명한 서부산업은 도산직전 특허기술로 기사회생

-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디슨,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 미래산업, 고주파 부품업체인 KMW, 200여건의 산업재산권을 가진교량부품의 선두주자 KR등도 특허기술로 성공한 대표적 벤처기업 임

사례3.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

■ 매직후프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주)렌토

- 서종환 사장은 누구나 쉽게사용하면서도 금방 실증내는 홀라후프를 재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의 핵심은

- 1) 홀라후프의 안쪽면에 돌기를 부착 흥미를 유발하고 체중감소 효과,
- 2) 휴대가 편리하도록 분리 가능하게 제작

- 특허 출원 등 권리화 결과

- 10여개국에 특허출원, 년 수백만불의 수출계약체결
- (주)렌토는 현재 특허등 10여건 보유 중

사례4.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기업

■ 콜라. 맥주깡통의 따개 하나로 성공한 봉정산업

- 아이디어 발굴

· 조성호사장은 아내와 미국 여행중 아내가 콜라를 따다가 손톱이 부러졌 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출발

· 따개와 깡통사이의 홈이 너무 좁기때문이라는데 생각이 미쳐, 그 개선안으로 기존따개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부위에 탄력성있는 철판을 덧대어 누르면 간격이 벌어지게 한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

- 특허출원등 권리화 결과

· 세계60여국에 특허출원을 마쳤고 국내외 업체로부터 특허권 실시 계약 제의 쇄도

■ 반디라이트 볼펜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세아실업

- 김동환 사장은 야간에 경찰관의 목과 어깨 사이에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보고 볼펜끝에 형광물체를 이용, 밤에도 불을 밝혀 쓸수있는 반디 라이트볼펜 개발

- 특허 출원 등 권리화 결과

· 년 650만달러를 외국에서 벌어들임

· 세아실업은 현재 특허, 실용신안 100여건 보유 중

사례5. 특허담보, 기술담보대출로 성공한 기업

■ (주)세라텍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소재인 칩 비드 인덕터 등을 70% 이상 수출하는 벤처기업

○ '99년 초부터 컴퓨터에 대한 수출주문이 쇠도하는 바람에 설비를 늘려야 했지만 설비자금 조달문제 발생

○ 이때 이 회사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기술담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야 했었음.

○ 이 회사는 보유중인 특허권 25건중 11건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13억원을 대출 받아 설비조달 문제 해결후 계속적 성장

○ 평 가

- 우수한 산업재산권 보유시 물건에 대한 담보 없이 기술담보대출, 사업화자금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성공 가능

사례6. 특허기술이전 성공 사례

페타이어를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백전호씨

o 특허기술

- 페타이어 내부에 완충 스프링을 내장하여 충격완화 효과 극대화
- 각종 분리대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제품

o 특허기술 이전·매매

- 상품화에 어려움을 느낀 백전호씨는 한국 발명진흥회 특허 기술 사업화알선센터의 소개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 일경실업(주)에 특허권 이전

o 결 과

- 백전호씨는 일경실업으로부터 특허권 이전 대가로 일시금 3천만원, 제품 공급가액 5%의 로열티, 6개월간 100만원씩 지급 받기로 함.
- 일경실업은 1년여의 기술개발후 상품화가 이루어져 전국에 양산 보급중

특허분쟁의 발생 요인

1. 직접 침해

- 타인의 발명을 그대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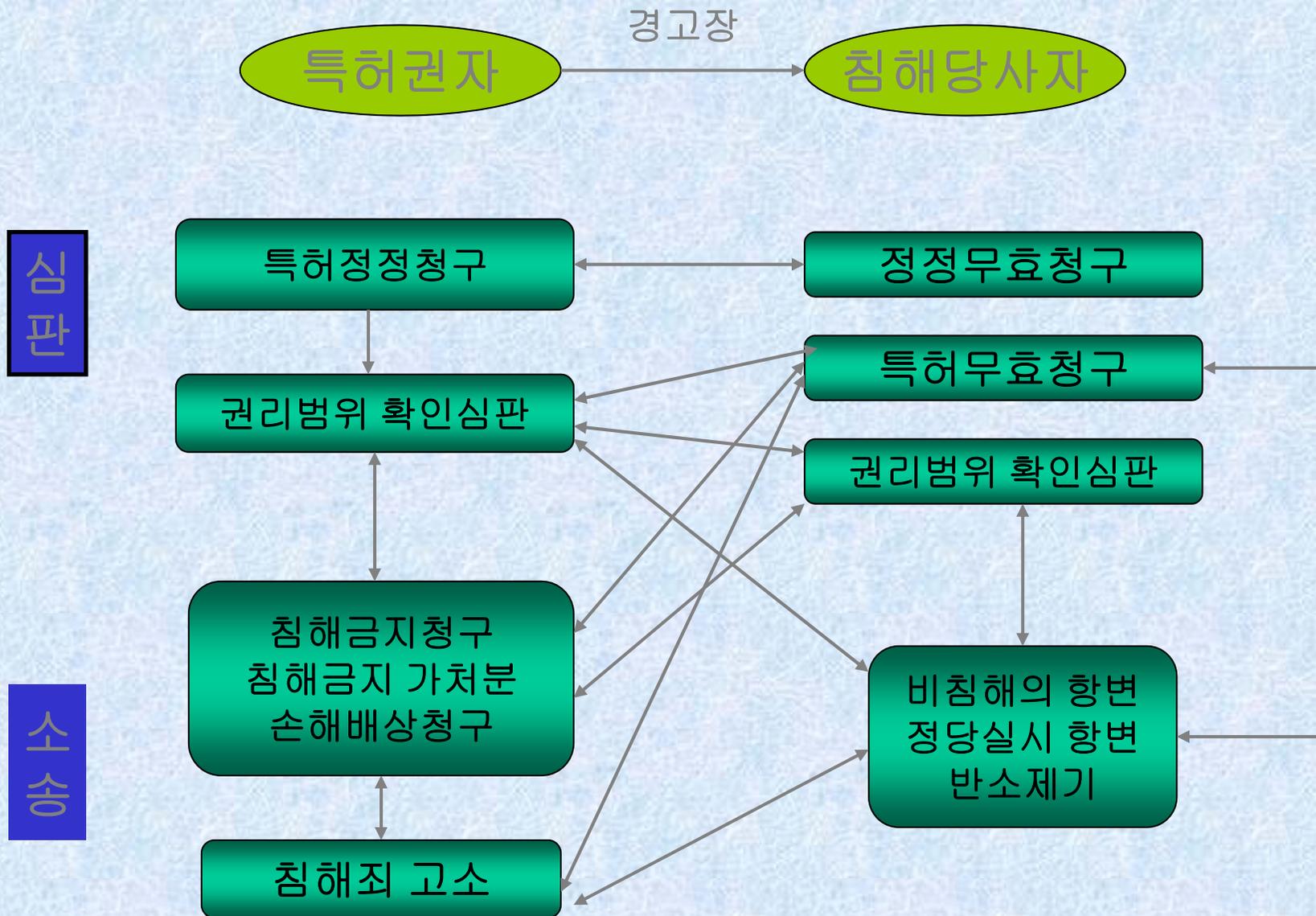
2. 간접 침해

- 기본 발명을 이용한 발명을 실시(이용발명)
- 개량발명(선택 발명)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을 업
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하는 등의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하는 등의 행위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1. 경고장의 발송
2. 형사 고소
3.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청구(일반 법원)
4. 가처분, 가압류 신청(일반 법원)
5.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특허침해분쟁에 따른 공격·방어방법



분쟁발생 후 대응책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

1. 경고의 적법성 및 특허권존재의 확인

- 특허권 침해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 한함
-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검토

2. 침해주장 내용 파악

-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 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3. 침해 여부의 조사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가,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문의 사항 접수

특허청 홈페이지 Q&A : <http://www.kipo.go.kr>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 Q&A : <http://kiponet.kipo.go.kr>

사용자 지원팀(User Help Desk)

대전 1544-8080(대표전화), 042-481-5584

전자우편(Email) : kimhs99@kipo.go.kr



감사합니다